

모성보호·여성고용안정책·직장탁아 설치 등에 역점

새해 여성 노동계는 새 정부가 공약한 노동정책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에 주목하는 한편 모성보호의 확대, 여성고용안정책 촉구, 직장탁아의무 설치 등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유급 유산휴가제
근로기준법에 정식 삽입해야

모성보호의 확대

△산전후 휴가 90일 이상으로 확대—현재 대다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60일 휴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를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인 12주 이상으로 확보하자는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휴가일수 연장운동이 성공한 기업체는 65일(마산의 한국웨스트), 70일(한국동광, 한국산본, 인천세광병원). 조항에는 산전·후를 포함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나 임금지급 규정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무급으로 휴직하고 있다.

△유급유산휴가제 실시—임신 4개월 이후의 조산·사산시에 산후 6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인 경우에는 2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연장되도록 조처해 달라는 요구다.

현재 노동부의 지침으로



▲중소기업의 하청 계열화가 증가하면서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유산·조산·사산 등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돼 있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정식으로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유산휴가를 확보한 사업장은 한국증권, 세광병원, 고대의료원, 소화아동병원, 신천연합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병원, 신한·중소기업·외환·한일은행 등이 다.

이밖에는 임신중 여성의 야간근로 전면금지,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제 실시, 자녀간병 휴가제 실시,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여성고용안정책

△임시직 규제—여성들을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부분으로 꼽힌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성임금노동자 중 23.2%가 계약직, 촉탁, 일용직 등의 임시고용으로 고용불안정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 업무를 하면서도 각종 수당, 휴가, 상여금, 사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계의 주장은 임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임시직으로 정규직을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내노동자의 보호대책—최근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가 증가하면서 가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

다. 이들은 갯수제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나 산업재해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이나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내노동자에게 '최저공임제'를 실시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가내노동법이 제정되어 있어 가내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탁아소 없는 사업장
부모에게 보육수당 지급돼야

이밖에도 공공부문인 국영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국가기관부터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는 것과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및 직업훈련기관 증설 주장도 계속될 전망이다.

직장탁아소 확대

△직장탁아소 설치의 의무화와 증설—그간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돼 있는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를 설치하라'는 조항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남녀노동자 상시고용 1백5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를 설치하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생산직 기혼여성의 규모별 분포는 1

0~1백인 이내 사업장에는 43.4%의 여성근로자가, 1백인에서 3백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5.3%의 여성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이 기준으로 제시한 5백인 이상 사업장에는 24.4%의 여성근로자가 있어 다수의 여성이 영유아보육법의 혜택을 못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탁아소 설치 지원—기업주의 형편상 탁아소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부가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 탁아소, 사원주택 내 탁아소, 몇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탁아소 설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탁아소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보육 수당 지급—부득이하게 탁아소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부모에게 보육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사부 지침에 의한 보육료는 3세 미만인 경우 일반시설에서는 2만7천원 정부지원 시설에서는 4만1천원을, 3세 이상인 경우 일반시설에서는 9만3천원 정부지원시설에서도 3만4천원이 책정돼 있다.

이밖에도 학교병설 탁아소 설치의 의무화, 노동자 주거밀집 지역에 국공립 탁아소 설치 의무화 등도 주장될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